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
번
안
호

314

제출년월일 : 1994. 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-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 12. 31.)에 의거 '교육행정'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직급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.
- 국무총리지시 제3호(총무처 '93. 4. 23.)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"위원회" 명칭을 "협의회"로 변경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직급명칭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, "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함 (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).
- "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"를 "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"로 함 (안 제15조).
- 부칙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(안 부칙 제2조)
 -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함.
 - 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하고, "자문위원회"를 "자문협의회"로 함.
 -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함.

□ 개정근거

-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(대통령령 제14042호, '93. 12. 31.)
- 국무총리지시 제3호(총무처 '93. 4. 23.)

□ 조례안 : 덧붙임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"충청북도학생도서관장과"를 삭제하고,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 행정사무관"으로, "지방행정 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주사"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제15조중 "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"를 "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등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①충청 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"지방행정사무관"을 "지방교육행정사무관"으로 한다.

②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교육행정주사"로 한다.

제10조제6호와 제11조중 "자문위원회"를 "자문협의회"로 한다.

③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"를 "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교육행정주사"로 한다.